

#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

송 양 섭 \*\*

1. 머리말
2. 洞中의 구성과 기능
3. 洞錢의 조성과 殖利運營
4. 洞錢의 운영과 기능변화: 軍布俵殖錢의 사례
5. 맺음말

## 1. 머리말

거제도 동남부의 북병산 끝자락 연해에 돌출된 포구마을인 舊助羅里(項里)는 인근의 촌락들과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 왔다. 이 지역은 인근에 통영·수영과 예하의 수군진이 밀집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구조라와 구조라를 둘러싼 인근의 촌락군은 이와 관련된 각종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조라를 비롯한 지역의 촌락군은 대부분 불만한 사족세력을 찾기 힘든 民村의 성격이 두드러지거나와 이들 촌락들은 여러 갈래로 가해지는 부세· 잡역의 압력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존립·유지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 촌락 내부에 ‘洞中’으로 불리우는 논의구조가 활성화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구조라 마을에는 일군의 촌락문서가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마을 차원의 공유재, 즉 ‘洞錢’ 형태의 기금운영과 관련된 각종 置簿冊이다. 자료는 복잡하고 결락이 심하지만 어느 정도 시계열을 갖추고 항목도 구체적인 만큼 이 시기 洞錢 운영의 실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정보를 담고 있다. 19세기 전국적으로 빈발한 민란과 농민전쟁으로 지역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국가의 지역지배 방식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 지역에 대한 관권의 침투는 더욱 강력해졌고 이에 대한 촌락사회의 대응도 적극적인 양상을 띠어갔다. 촌락 사회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재되기 마련이지만 국가로부터 가해지는 부세·재정과 관련된 문제야말로 가장 실체적인 것 중 하나로 이들 마을은 면리의 행정조직을 타고 내려오는 관령과의 접점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역동적인 사회상을 연출하였다.

조선후기 이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촌락사회는 대부분 洞契 형태의 결사체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동계조직은 촌락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직임과 조직을 갖추었으며 입지와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인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촌락내부의 운영방식에 따라 이를 신분적·위계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유형과 평등주의적·공동체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sup>1)</sup> 자료가 허용될 경우 촌락 및 동계 연구는 지주경영을 비롯하여 마을재정·물자거래·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미시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사 연구의 수준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전통과 근대를 가로지르는 사회 밑바닥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기존의 제도나 사건사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sup>2)</sup>

1) 김경일, 1984 「조선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35.

2) 안병직·이영훈, 2001 『맛질의 농민들: 한국근세촌락생활사』, 일조각; 정승진, 2006 「나주 초동동계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 54; 김건태, 2008 「조선후기~일제시기 전통동성촌락의 변화상: 전라도 남원 둔덕리 사례」, 『대동문화연구』 62; 김건태, 2010 「조선후기 계의 재정운영 양상과 그 성격: 전라도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書契를 중

이 글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洞錢과 관련해서는 전라도 장흥지역 촌락에 대한 일련의 사례 연구가 많은 시사를 준다. 이들 마을은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공통적으로 동계·동중 차원의 식리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양상이 관찰된다. 어서리의 경우 동계차원의 殖利錢을 운영하여 마을에 가해지는 각종 부담에 대처하고자 하였고<sup>3)</sup> 모산리의 경우 洞中과 洞契가 연동하면서 식리수입을 통해 마을에 가해지는 각종 부세에 공동대응하고 있다.<sup>4)</sup> 도서지역인 금당도 차우리는 洞契錢을 통해 행정·부세 관련 비용에 지출하였으며 木契錢을 운영하여 洞中烟役에 충당하였다. 목제전의 수입은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 간척, 어장관리, 부동산 매입 등의 용도로 쓰여졌다.<sup>5)</sup>

이와 같이 장흥 세 마을의 사례는 동중·동계의 공유재 조성이 국가로부터 가해지는 부세압력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때로는 동계·향약 조직을 통해, 때로는 동중과 동계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을차원의 공유재 운영은 마을 ‘자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고 이러한 측면이 야말로 종래 그리 주목하지 못했던 19세기 촌락운영의 중요한 면모로 적극적으로 천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종래 연구의 상당수는 주로 촌락자체의 규율이나 공동체성의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촌락사회의 또 다른 영역, 즉 국가권력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관민간의 절충과 타협의 공간까지 시야를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촌락의 ‘자치’는 마을 스스로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규정력을 가진 관권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洞中·洞契의 역할과 기능 가

심으로』『한국사학보』 38.

- 3) 이용기,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11 『1860~1970년대 동계의 식리방식의 변화와 ‘합리성’의 이면: 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의 사례를 통하여』, 『역사문제연구』 25.
- 4)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단 3차년도 결과발표회 발표문』.
- 5) 김경옥, 2005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金塘島 車牛里 木契의 조직과 기능』, 『古文書研究』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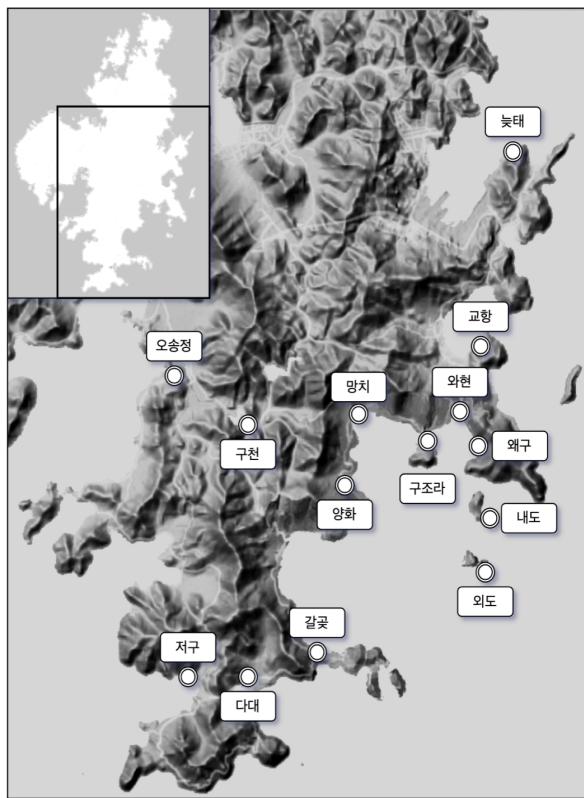
운데 마을차원의 공유재 운영은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방통치는 관권의 일방적 관철이 아닌 지배와 대응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길항과 갈등, 그리고 타협과 협력 등 복잡한 내용을 포괄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복합적 사회상이야 말로 이 시기 촌락사회가 드러내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19세기 각급 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부세· 잡역에 대처하기 위해 수령은 관내 면리에 일정한 자금을 출자하기에 이른다. 촌락에 분급된 일종의 종자돈은 ‘洞中’의 공유자산으로 ‘洞錢’이 조성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구조라의 ‘洞錢’은 그 운영과정을 통해 종래 평면적·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관권이 촌락사회에 파고 들어가는 양상과 그것이 마을 내부의 자율공간에 미치는 규정력을 생생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조라의 동전 운영 사례는 전통사회를 벗어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촌락차원의 사회적 심층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사회가 보여주는 지속과 변화, 연속과 단절의 복잡미묘한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거리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구조라리의 입지와 촌락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洞錢의 조성 및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관청에 출자하고 마을민이 부응하여 만들어진 동전은 그 운영과정에서 중앙의 구심력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독자적인 사회저류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바, 당금 촌락사 연구에서 특별히 긴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 2. 洞中의 구성과 기능

구조라는 마을의 크고 작은 업무를 처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는 '洞中'<sup>6)</sup>이 존재했다. '本洞楔中'의 표현이 보이기는



〈그림 1〉 거제도 동남부의 주요 촌락 분포

하지만<sup>7)</sup> 동계의 존재는 분명치 않고 결성되어 있더라도 미약하거나 '동중'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확률이 크다. 구조라는 자연촌락 자체가 '동중'의 조직을 두고 이를 통해 행정단위이자 공동체 조직으로 마을민을 포괄했다는 점에서 여타 사례와 구분된다. 동중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동중의 명의로 발급된 각종 문서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중은 '本里會議'<sup>8)</sup> · '洞會'<sup>9)</sup> · '洞會議'<sup>10)</sup> · '公議'<sup>11)</sup> · '完議'<sup>12)</sup> 등으로

6) 『항리호적중초』(『고문서집성』 35, 1998, 16-29면); 『오동절목』(『고문서집성』 35, 89- 91면);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7) 「수표」(『고문서집성』 35, 638면).

8)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9면).

9) 『항리소임원납전봉기』(『고문서집성』 35, 239-244면).

10) 『작청공계전항리표급완정책』(『고문서집성』 35, 294-295면).

11) 『항리방군안(절목)』(『고문서집성』 35, 86-88면);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

표현되는 논의구조를 통해 마을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협의하고 집행하였다. 다음은 1831년 「完議」의 일부이다.

우리 本洞은 各樣進上處에 매여 있고 公役이 지나치게 많아 居民이 疲殘하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一洞이 학회하여 크게 公議를 연 후 各道各邑 興販船의 旅客에게 春秋로 15냥씩 합 30냥을 牽定하니 이같이 完議한 후 民瘼을 알지 못하고 一員이라도 完議를 지키지 않는다면 毀家出送할 뜻을 영구 준행할 일.<sup>13)</sup>

구조라가 마을의 進上과 公役에 충당하기 위해 마을 내 포구에 정박하는 商船으로부터 춘추로 15냥씩 거두는 안건은 '동중이 학회하여 크게 公議를 연 후'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의 박탈을 뜻하는 '훼가출송'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중의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집행은 이상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洞里나 洞契에 나타나는 직임은 尊位·執綱·頭民·洞首·里正·統首·約首·領座·掌務·公員·都有司·有司·所任·使喚·里隸·里任·洞下·

〈표 1〉 1849년 多大里의 계방완문 서명자

성명	직임	직역
金昌裁	座上	閑良
李孰三	副上	通政
金次爰	三上	閑良
金險山		通政
金甘發		正兵
孔福三	尊位	
金先三	公員	
姜命守		正兵
金昌義	里首(筆執)	閑良

洞掌·長老 등<sup>14)</sup>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동일한 마을이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표 1〉은 1849년 거제 다대리의 里內 職任을 제시한 것이다.<sup>15)</sup> 우선 座上(김창재)·副上(이숙삼)·三上(김차돌)은 동일한 계열의 직임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의 직역은 閑良·通政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 尊位(공복삼)와 公員(김선삼)

159면).

12) 『동전유음책』(『고문서집성』 35, 160-205면).

13) 「완의」(『고문서집성』 35, 607면).

14) 김경일, 앞의 글, 186-187면.

15) 「完議·立議」(『고문서집성』 35, 619면).

의 경우, 마을회계 및 재정과 관련된 직임으로 직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筆執을 맡은 里首(김창의)는 里任의 異稱으로 보이는데 직역은 한량이다. 직임이 없는 김협산·김감발·강명수 등 3명도 완문에 서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通政·正兵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 김감발이 1789~1890년 어간에 里任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sup>16)</sup> 대체로 동중의 직임을 맡은 경험이 있고 마을안팎의 사정에 밝은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다대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頭民이 '家產이 豐饒'하다는 언급<sup>17)</sup>에서 보듯 이들 각 종 직임 담당자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넉넉한 편이었던 듯하다.

이 시기 구조라와 인근의 촌락들에 주로 나타나는 직임은 里任·里首·洞首·尊位·公員(公所員)·座上·頭民 등이었다. 洞里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里任은 里首·洞首 등으로도 불리웠으며 20세기 초 里長으로 명칭이 바뀐다. 里任은 洞中の 대소사는 물론 官과의 연락 등을 맡았고 사안에 따라 인

근의 촌락과도 협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尊位는 '該洞의 長老'로<sup>18)</sup> 그 위상에 걸맞게 동중업무 가운데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재정을 관장·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던 듯 하다. 公員은 재정실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 내 유력자로 보이는 頭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치 않지만 존위·공원과 함께 마을재정과 관련된 업무에 주로 나타난다. 동중의 공유자산 운영이 활성화될수록 이들 직임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었다. 座上·副上·三上은 마을 내

〈표 2〉 산저 11동 里任의 변동

洞里	1789	1790
網浦	불명	陳昌番
三巨	裴次乞	尹壹沙里
吾松丁	金億金	陳昌用
望峙	朴命談	姜順泰
楊花	金再三	姜壽切
猪仇	陳得就	梁興用
塑串	불명	林雲鳥
多大	金甘發	金甘發
九千	鄭溯淡	朴儀敦
火蟻	陳碩泰	金聖連
後化峙	姜就采	朴今三

노동조직과 관련된 직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16) 「標」(『고문서집성』 35, 646면); 「標」(『고문서집성』 35, 605면).

17) 『牒呈』(『고문서집성』 35, 543면).

18) 『승정원일기』 1872책, 순조 3년 12월 5일.

이들의 교체주기는 어떠했을까? 구조라 이임은 매년 3월이나 9월에 바꾸는 것 이 원칙이었던 듯하지만<sup>19)</sup>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표 2〉는 1789년과 1790년 ‘山底11洞’里任의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약 1년 남짓 되는 기간에 다대포 김감발만 유임되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망포·갈곶은 1789년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망포의 陳再平은 직임이 座上이었다.<sup>20)</sup>

한편, 1836년 1월, 1836년 11월, 1837년 11월, 1838년 5월, 1838년 9월의 5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임의 변동상황을 보면 구조라는 陳連玉→金○○→盧○○→張尙宅→姜春泰, 망치는 千以明→李○○→千○○→金卜伊→黃云晨, 양화는 朴日九→孫○○→邊○○→陳守用→李淳伊로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2개월의 구간에서 모두 인물이 교체되고 있다.<sup>21)</sup> 한편, 1839년 12월에서 이듬해인 1840년 5월의 6개월간 망치·양화·구조라 세 마을 이임의 변동사항을 보면 망치·양화는 그대로 유임되고 구조라는 노원옥에서 이치근으로 바뀌고 있다.<sup>22)</sup> 반면 단기간에 해당하는 1850년 8월·11월·12월, 1851년 1월·2월의 5개 시점에서는 同姓을 동일인으로 간주했을 때 盧儀敦→盧○○→河○○→河○○→河○○ 등으로 연말에 한번 교체된 것으로 나타난다.<sup>23)</sup> 여타 구조라 문서에서도 이임과 여타 직임의 성명이 짧은 기간 빈번하게 교체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임을 비롯한 동중의 각종 직임은 임기가 최대 1년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존위와 공원의 경우는 어떨까? 1866년 3월·9월, 1867년 3월·9월의 4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존위는 黃夫旭→黃夫旭→姜大仁→姜大仁의 순으로 담당하고 있다. 존위는 대략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黃夫旭과 姜大仁의 경우, 1872년 3월과 1870년 9월에도 각각 존위 직임을 맡고 있다. 姜大仁은 1873년 洞首 姜道琳의 조카이기도 했다. 공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盧德哲→朴性

19) 『洞錢俵殖記』(『고문서집성』 35, 96-111면).

20) 「標」(『고문서집성』 35, 646면); 「標」(『고문서집성』 35, 605면).

21) 『四洞倭船公事置簿』(『고문서집성』 35, 313-352면).

22) 『四洞倭船公事置簿』(『고문서집성』 35, 313-352면); 『四洞倭船公事置簿』(『고문서집성』 35, 313-352면).

23) 『전령』(『고문서집성』 35, 480면); 「서목」(『고문서집성』 35, 521면); 「서목」(『고문서집성』 35, 522면); 「서목」(『고문서집성』 35, 523면); 「서목」(『고문서집성』 35, 523면).

彖→金有卜→林哲元으로 모두 다른 인물이 맡고 있다.<sup>24)</sup> 존위보다 자주 바뀌고 있는 것이다. 1887년 1월, 1887년 3월, 1887년 9월 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존위의 경우 盧士允→朴卜守→朴哲岩, 공원은 金啓中→朴座勸→姜得先으로 모두 교체되고 있다.<sup>25)</sup> 여러 직임을 거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듯 1878년 9월 이임 尹石俊은 1880년 10월 공원을 맡고 있다.<sup>26)</sup> 3~6개월 간격의 짧은 기간임에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현상이 동전관리와 관련하여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식리전의 회수불능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인지 좀 더 따져볼 문제이다. 이들 직임이 번거로운 업무와 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을 견뎌야했기에 마을민들의 기피대상이고 이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확률도 크다.

里任이 里內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마을을 대표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그 역할을 다른 직임들이 대신하기도 했다. 1833년에는 조라장 소속 7동의 서목에 頭民들이 서명하고 있고,<sup>27)</sup> 1840년 왜선지공을 위한 구조라·망치·양화·와현 4동의 치부책에는 里首·座上·尊位·公員 등이 마을을 대표하고 있다.<sup>28)</sup> 1869년에도 항리·망치·양화·왜구 4동의 書目이 頭民의 명의로 작성되었고<sup>29)</sup> 1873년에는 洞首(구조라·망치·양화·왜구)와 頭民(와현)의 명의로 『五洞節目』이 만들어지고 있다.<sup>30)</sup> 이임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

24)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25) 『軍布六年并本利區別記』(『고문서집성』 35, 221-238면). 확인되는 존위와 공원의 성명은 1863년 호적중초와 대조해 보면 이들의 상당수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재되어 있더라도 직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확인되는 사례는 존위의 경우, 황부옥은 공생, 강대인은 업무조라사부로 나타난다. 공원의 경우는 박성록이 황조인, 임철원이 방군, 강시철이 업무조라사부로 나타난다. 존위와 공원은 직역의 층위에서 미묘하게 달랐던 듯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항리호적중초』(『고문서집성』 35, 16-29면)].

26)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군포전민간분급』(『고문서집성』 35, 276-283면).

27) 『거제조라장민서목』(『고문서집성』 35, 507면).

28) 『四洞倭船公事置簿』 25(『고문서집성』 35, 313-352면).

29) 『서목』(『고문서집성』 35, 541면).

30) 『五洞節目』(『고문서집성』 35, 89-91면).

었던 것이다.

동중의 직임들은 '願納'의 형식으로 동중에 일정액수를 납부하기도 했는데 1906년 그 내역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동임을 거치거나 담당한 자들의 명단이 파악된다. 여기에 등재된 사람들의 성씨별 분포는 대체로 호적중초에 나타난 성씨의 비중과 비례한다. 이들 원납자수를 호적중초의 성씨별 연간 평균등재인원수(괄호의 숫자)와 비교하면 蘆 8명(25명), 姜 14명(19.7명), 朴 7명(10.7명), 金 7명(9.7명), 李 4명(6.8명), 邊(4.2명) · 鄭(2.5명) · 孫(1.3명) 각 2명 등으로 강씨가 호적등재수에 비해 원납이임의 수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분포였던 것이다.<sup>31)</sup> 특히 1명씩 나타나는 尹 · 秋 · 車 · 玉 · 夫 · 千 · 辛 · 南 등은 호적에 나타나는 諸 · 林 · 柳 · 權 · 梁 · 夫 · 尹와 비교해 尹 · 夫 두 성씨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호적에 등재조차 안 되었던 소수 성씨들도 동임을 담당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마을의 운영을 몇몇 성씨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리내 직임은 임무의 기능적 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분장되었고 성씨 간 권력적 · 특권적 지배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몇몇 사람이 여러 동임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임 간 位次는 그리 중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중은 교체주기가 짧은 각종 직임의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며 직임의 담당이나 동중의 운영과정에서 별다른 신분적 요소나 권력 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오히려 이들 직임은 기피 대상인 듯한 느낌마저 있었다.

동중의 회합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동중은 1912년 3월 24일~3월 29일의 6일간 모임을 가지는데 이들이 제공받은 밥상수가 『食床抄』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식상초』에 등재된 인물의 상당수가 동중의 직임을 담당하거나 동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생각되는데 1상 41명, 2상 14명, 3상 5명, 4상 · 5상 각 1명 등 총 94상을 62명이 대접받고 있다.<sup>32)</sup> 1일당 평균 15~16床 정도

31) 『項里所任願納錢捧記』; 『里任願納錢入記』; 『里任願納錢入記』(이상 『고문서집성』 35, 239-244면); 『항리호적중초』(『고문서집성』 35, 16-29면).

32) 『食床抄』(『고문서집성』 35, 383-389면). 이 때 회합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을 주로 전 현 직 동임층으로 구성된 『項里所任願納錢捧記』 · 『里任願納錢入記』 · 『里任願納錢入記』(이상 『고문서집성』 35, 239-244면)와 비교해보면 박영수 · 강남두 · 강세준 · 김상률 · 박작

가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에 제공된 셈이었다. 특수한 사례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마을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합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동중은 이러한 회합의 비용을 댈 만큼의 여력도 갖추고 있었다.<sup>33)</sup> 마을과 관련된 사안이 무겁거나 복잡할 경우 동중회합의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동중의 업무와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구조라 문서에 남아있는 '동중'의 기능에 관한 정보는 관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마을 내 호구수의 변동과 재해·이래이거 실태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가 대표적이다.

- 1838년 민가 33호가 전소된 화재를 面에 보고하여 이재민의 임시거처 마련.<sup>34)</sup>
- 1846년 출신이 불분명한 金長哲이 里內에 잠시 머무르다 雇奴가 되기 위해 移居.<sup>35)</sup>
- 1850년 마을에서 구걸하는 夫方伊·俞夫斤·金尙珍·黃處仲 등 4명의 실태.<sup>36)</sup>
- 1851년 마을에서 구걸하던 玉孟允·金奉孫·沈興宗·鄭道云 등 4인이 행방불명 상태임.<sup>37)</sup>
- 1851년 統中營船所庫直으로 仰役하던 梁京良이 고성군 춘원면으로 移居함.<sup>38)</sup>

---

지·노태현·박숙이·정윤상·박우진 등 적지 않은 인물이 겹친다. 한편 『食床抄』 작성 날짜와 동일한 1912년 3월 30일 『項里漏落申告人抄冊』(『고문서집성』 35, 383-389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 때 모임은 아마도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등록에 누락된 소유지를 신고하기 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았나 짐작된다. 하지만 식사를 대접받은 인물 중 누락토지신고인에 등재된 인물은 박진수·박혹이 2명에 불과하다. 차후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33) 앞서 언급한 1906년 원납전은 23명 중 21명이 낸 총 78냥의 지출 중 같은 해 강학업의 원납전이 1월 洞會 비용, 박수영의 원납전은 면 소재 大洞의 회합비용으로 공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1910년 8명이 낸 총 24냥의 원납전 중 8냥이 洞會 비용으로 공제되었다. 1912년에도 사정은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원납전을 거둔 목적과 지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동중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중의 직접적인 회합비용은 필요에 따라 이들 동임들의 각출을 통해서도 수시로 충당된 듯하다.

34)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10면).

35)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12면).

36)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1면).

37)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4면).

38)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5면).

이상의 사례는 里內 일반민호로서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근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流民 등의 부류에 대한 보고가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을민의 주거와 이동 실태에 대한 파악이야말로 행정의 말단이 담당한 통상적인 업무였던 것이다.

한편, 동중과 동임의 임무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각종 부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임술민란 직후인 1863년 거제부사는 대대적인 軍役查正을 실시한 후 군액의 결원을 해당 里에서 자체적으로 채워 넣도록 하는 里定法을 실시한다. 이에 군역결원에 대한 代定은 해당 里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里가 閑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里任이 面首에게 보고하면 면임이 面會를 통해 面內 각里로부터 閑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해당 里와 面은 '公議'를 통해 허위사망자·모청양반자 등을 쳐별하였다.<sup>39)</sup>

이같이 이정법의 실시로 동리 단위 공동납은 더욱 진전되었고 이는 동중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곡을 비롯한 다른 부세·잡역에서도 양상은 비슷했으리라 짐작된다. 마을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에 마을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과도하게, 혹은 잘못 부과된 부세·잡역 등에 대해 구조라민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 1852년 감목관에 書員草價 1승 2합으로 감액 요청.<sup>40)</sup>
- 1876년 補民庫 소관 院畠田錢 13.67냥 외 추가징수에 대한 시정 요구.<sup>41)</sup>
- 1878년 鎮戶에 대한 戶錢 반감 규정 준수 요구.<sup>42)</sup>
- 1883년 水軍鎮의 冒耕勘錢 7냥 抄出이 부당하므로 鎮民에게 2.5냥을 減徵하고 4.5냥은 輪納하도록 요청.<sup>43)</sup>
- 1884년 근거없이 부과된 大同移還米 14斗4刀에 대한 頤給 요청.<sup>44)</sup>

39) 『項里防軍案(節目)』(『고문서집성』 35, 86-88면). 구조라의 이정법 실시와 이후의 추이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4 「19세기 거제도 구조라 촌락민의 직역변동과 가계계승 양상」『한국문화』 67 참조.

40) 『巨濟助羅場內項里楊花望峙臥逸串倭仇五洞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2면).

41) 『전령』(『고문서집성』 35, 483면).

42)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46면).

43)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0면).

44)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1면).

- 1889년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김화일 명의의 還錢 14斗 4刀의 처리 방법 문의.<sup>45)</sup>
- 1890년 鎮戶에 부과된 戶錢 액수에 대한 시정 요청.<sup>46)</sup>
- 1890년 중복 부과된 日債錢 10.8냥 頗給 요청.<sup>47)</sup>
- 1890년 중복 부과된 秋戶錢 시정 요청.<sup>48)</sup>

구조라민의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1852년 감목관에 대한 書員草價 감액요청과 같이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각급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부세· 잡역이 공동납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동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동중은 마을 내부의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역을 하거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반 현안을 처리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구조라에는 13곳의 漁條가 있었는데 이를 배정받기 위해 立船人 30여인이 執籌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해 상해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條價도 크게 올라가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이에 1859년 洞中이 나서 논의한 끝에 立船人們이 돌아가면서 漁條를 받는 것(輪回受條)으로 完議하고 관의 立旨를 발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sup>49)</sup> 1827년 전년도 미납 12월 군포전 6.2냥을 동중수입인 主人路貢 1석을 발매하여 납부하기로 한 것<sup>50)</sup>과 1835년 사망한 裴介卜·李道尙 名下의 劣米錢 징수를 결정한 것<sup>51)</sup>도 마찬가지이다. 1909년에는 ‘大韓巨濟項里洞中’ 명의로 日本 媛卿縣 越智郡 漁島村 龜井升七이라는 자에게 동중에서 관리하는 ‘折木江邊’ 한 곳을 임차해주고 매년 費金 10원을 받도록 계약

45)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9면).

46)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0면).

47)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1면).

48)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3면).

49)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6면). 이미 1811년 통영이 주관하는 巨濟漁場의 漁條·防簾·去處에 대한 수세문제는 조정에 보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漁條의 경우 이미 海民에게 ‘切骨之弊’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승정원일기』 1995책, 순조 11년 3월 19일). 어조 분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는 전민영, 2017 「19세기 거제 구조라리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여객주인·어조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참조.

50)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3면).

51)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9면).

하고 있다.<sup>52)</sup>

하지만 동중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사안도 있었다. 1831년부터 동중은 ‘洞民各樣隨應之費’를 확보하기 위해 尊位와 公所員을 興販主人(商販主人)으로 임명, 마을에 정박한 상선으로부터 旅客例情錢을 거두도록 했는데 1853년 洞中人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흥판주인을 맡아 ‘洞中에 해를 끼치’고 ‘洞給之資’를 모조리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의 신상은 불명이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았던 듯 구조라 동중은 ‘洞內私力’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거제부에 호소하여 해당인의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sup>53)</sup>

1876년에는 소동리에 사는 知世鎮吏房 丁甲出이라는 자가 야음을 틈타 자신의 부모묘를 구조라에 偷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알게 된 구조라민들이 항의했으나 정갑출은 오히려 ‘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20세 전 부모를 잃고 혜메다가 겨우 묘자리를 찾아 이장했’는데 허위사실까지 날조하여 자신을 포함한다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구조라민들도 이장한 묘자리가 풍수적으로 ‘後龍이入首하는 一脈’으로 ‘村中源脈의 가장 중요한 땅(村中源脈最要之地)’임에도 정갑출이 자신의 위세를 믿고 구조라민을 업신여겨 ‘목을 병들게 하고’ ‘元氣를 빼앗을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고 반발하였다. 정갑출이 移墓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구조라민은 姜道林·黃富旭 등 17명의 명의로 等狀을 올려 이 문제가 ‘私力’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거제부에서 조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거제부의 지시에 따라 정갑출은 移墓를 약속하는 手標를 제출함으로써 분

52) 『明治四十二年己酉大韓巨濟項里洞中前契約書』(『고문서집성』 35, 토지명문6, 633면). 거제도에는 구조라를 비롯하여 죽림포·저구미·다대포 등 4곳에 일본인의 어업기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라에도 일본인 거류자가 늘어나고 이들과 동민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듯 하다. 1909년 구조라 동중은 日本愛媛縣魚島村의 日吉重太郎·日吉辰治郎·横井米治·横井庄平·大林善作·大林新平 등과 ‘부인들이 길을 왕래할 때 유토 이거나 悖說을 하지 말 것, 어업을 서로 도와 상업할 일, 洞 앞에서 脱衣하지 말 것,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싸우지 말 것, 소와 말을 해치지 말 것’ 등을 합의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을 거쳐 公庭에 보고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證明書』(『고문서집성』 35, 643면)]. 이 시기 일본어민의 이주 및 어업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수희, 2010 『근대 일본 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참조.

53) 『完文』(『고문서집성』 35, 607면); 『完議』(『고문서집성』 35, 618면); 『完문』(『고문서집성』 35, 574면).

쟁은 마무리되지만 수군진의 이서인 정갑출의 偷葬을 ‘동중’의 힘만으로 막기에 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sup>54)</sup>

1888년에도 구조라 이임의 명의로 관에 書目을 올려 술을 먹고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육설을 퍼붓는 등 거리낌 없이 행패를 부리는 鄭在玉이라는 사내를 ‘洞中の 私力’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여 처벌지시를 받아내고 있다.<sup>55)</sup> 1888년에는 公錢 가운데 盧贊訥 名下 公錢 28.34냥과 姜介同 名下 公錢 21.25냥 을 頭民이 犯用하였으나 ‘洞中の 私力’으로 해결이 어렵자 거제부에서 이들을 잡아들여 公錢을 徵捧하도록 조치하고 있다.<sup>56)</sup> 이같이 ‘동중’의 역할은 다양했지만 그 권능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洞中の 私力’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대부분 관으로 넘어갔고 그 해결은 수령의 권위와 공권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중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문제도 관으로부터 完文·完議 등의 형태로 인정을 받아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중 자체의 논의나 수령과의 제도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조라민을 비롯한 춘락민들은 주저없이 등소를 감행했다. 〈표 3〉은 1851년 흥판 주인을 정해 마을 留泊船에 돈을 거두어 비용을 충당하자는 完議에 서명한 인물들을 2년 간격으로 벌어진 등소 참여자와 비교한 것이다. 1853년 등소는 留泊船에 돈을 거두는 흥판주인 사칭자 처벌을 호소한 것이었고 1855년 등소는 固城蛇梁島民의 紅蛤偷採를 염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857년 등소는 거제부의 負持軍 차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성씨별로 보면 전체 56명 가운데 盧氏가 16명으로 전체의 28.6%를 점하고 姜氏가 11명으로 19.6%, 朴氏가 6명으로 10.7%, 李氏·千氏가 4명씩 각 7.2% 등으로 盧·姜·朴 3성씨가 6할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등장하는 인물은 盧氏 7명, 姜氏 5명, 朴氏 3명으로 나타난다. 소수 성씨 정광일이 3회나 등장하고 천봉손·최오작도 2회 등장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등소

54) 『첩정』(『고문서집성』 35, 543면); 『소지』(『고문서집성』 35, 549면); 『소지』(『고문서집성』 35, 550-551면);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8면);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9면).

55)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7-498면).

56) 『첩정』(『고문서집성』 35, 543면).

참여자의 이러한 분포는 역시 수적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가 마을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성씨가 동중의 직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표 3〉 1851년 완문서명자의 1853·1855·1857년 등장 참여

성명	1851	1853	1855	1857	성명	1851	1853	1855	1857	성명	1851	1853	1855	1857
甘乞我時	○				盧莫戛	○	○			李件里金		○		
姜光得		○	○		盧奉尙	○				李茂友	○			
姜道敬			○		盧星道		○	○		李侑之	○			
姜奉伊	○	○			盧雄泰		○			李千云			○	
姜汝太	○	○			盧以敦			○		張東汗	○			
姜應周	○				盧仁三		○	○		張興福			○	
姜再三	○	○			盧仁才	○				鄭光日	○	○	○	
姜正己	○				盧仁中	○	○			鄭尚甲	○			
姜超周	○				盧日三	○	○	○		曹達淑				○
姜就才	○				盧之文	○				陳允成	○			
姜泰己	○	○			盧興太	○	○			千奉孫	○	○		
姜孝敦		○		○	李世貴	○				千奉宋	○			
高敬化	○	○			朴有談	○				千星京	○			
金中葉		○			朴有文	○	○			千成采			○	
盧□三	○				朴長云	○	○			崔五作	○	○		
盧確泰	○				朴之云	○	○			河福良			○	
盧道淳			○		朴千金			○		許福俾			○	
盧得新	○	○			朴就大				○	許楨	○			
盧得正	○	○			徐日中	○	○							

\* 자료: 『완문』(『고문서집성』 35, 574면); 『등장』(『고문서집성』 35, 563면); 『등장』(『고문서집성』 35, 564면); 『등장』(『고문서집성』 35, 565면)

\*\* 성명불상자 1명은 제외함.

이같이 마을 내 다수를 점하는 성씨는 동중의 직임을 주로 맡으면서 대소사를 주관하고 처리하였으며 동중의 완의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사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주도적으로 나서 여타 성씨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주도 성씨가 양적 비중에 걸맞는 활동 이외에 특권적인 형태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

는 등의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구조라에는 里內 대소사를 협의하고 처리하는 동중의 논의구조가 작동하였다. 각종 직임은 빈번하게 교체되었고 한 사람이 여러 직임을 넘나드는 등 동중은 유연하게 운영되었다. 몇몇 성씨가 동중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이들 간 권력적·특권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고 기능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소수 성씨가 직임을 맡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는 이들 직임이 동중의 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회계상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 관의 압박과 과중한 업무로 직임 자체가 기피대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부세·잡역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동중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다. 동중은 마을 내부의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역을 하거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반 현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동중의 권능은 제한적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에 호소하여 공권력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조라의 동중은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형태로 조직되었고 마을민을 장악하고 결속하는 힘은 느슨한 편이었던 듯하다. 아마도 동중과 마을민, 마을민과 마을민 간의 관계도 대체로 수평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3. 洞錢의 조성과 殖利運營

향촌사회 내부에는 각종 계나 향약 등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규약과 조직이 존재했다. 종래 성리학적 교화·윤리나 관혼상제 등 춘락 내 상호부조에 집중되어 운영되었던 향약·동계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조직은 18세기 후반을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세·잡역과 관련된 문제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동중의 업무와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마을차원의 재원, 즉 '洞財'의 마련과 운영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향촌민은 이제 '鄉中公論'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연망과 결속력을

다지면서 자금이나 전답을 공동으로 출연, ‘公物’·‘公財’ 등으로 불리우는 촌락 차원의 공유재를 만들어 부세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른다.

촌락의 공유자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의 개입 하에 조성된 경우가 상당 수를 차지했다. 중앙에 대한 부세 완납의 책임 외에 자신의 군현 재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도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령은 지방관청 내에 民庫를 비롯한 각종 재원을 조성하거나 관내 면리에 직접 출자하여 부세운영 과정에 닥쳐올 위험과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재원의 판출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왕조의 부세운영 과정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지방사회는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은 ‘목민’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sup>57)</sup>

구조라도 이러한 추세에 예외가 아니어서 늦어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촌락 차원의 공유자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라의 ‘洞財’는 주로 ‘洞錢’의 형태였고 일부 토지재원도 있었다.<sup>58)</sup> 洞錢은 대부분 殖利運營되었는데

57) 송양섭, 2016 「19세기 부세운영과 ‘항중공론’의 대두」『역사비평』 116. 이밖에 부세·재정 문제를 둘러싼 19세기 항촌사회의 공론형성과 공유재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가 있다. 배항섭, 2013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공론」『한국사연구』 161; 2014 「19세기 항촌사회질서의 변화와 민중의 대응」『조선시대사학보』 71;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역사와 현실』 112.

58) 관과 무관하게 구조라 洞中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도 있었다. 동중은 洞民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동답·동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토지명문」(『고문서집성』 35, 628면); 「토지명문」(『고문서집성』 35, 629면); 「토지명문」(『고문서집성』 35, 630면); 「토지명문」(『고문서집성』 35, 631면); 「토지명문」(『고문서집성』 35, 632면)].

연도	전답주	사유	전답소재지	전답규모	매입가
1831	金允伊	有累用處	大洞 光字員	1斗落5刀地=3負9束	26냥
1860	姜必京	公私債備納無路	我州裳字員	5斗落=25負3束	67.5냥
1881	金大鉉 千又準	累有用處 生活無路	大洞光字員 大洞光字員	3斗落5刀地=9負9束 3斗落5刀地=9負9束	77냥 80냥
1909	黃性立	洞中慰神之地 확보	家前基地	長9丈 廣9丈	40냥

지역민의 토지방매는 대부분 부세나 債錢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1831년 김윤이의 ‘累有用處’는 진상납부의 곤란함 때문이었고 1860년 강필경도 춘궁기에 公私債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토지를 판 경우였다. 1881년의 김대현(‘累有用處’)와 천우준(‘生活無路’)의 경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성 시기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명칭이 부여되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 항목들은 18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호적개수비용(口米代錢), 진상(稟古本錢), 군포·호

〈표 4〉 구조라 洞錢의 종류

洞錢名	初出·存續時期	액수(냥)	
		구조라	거제부
稟古本錢	1789~1894		315
邑便分錢	1847	0.85	
知世鎮便分錢	1847	2.88	
邑立馬錢	1848	0.8	
暗行御史推徵錢	1854		1,179.04
御史查徵錢	1861	25.9	
邑船所別備錢	1861	7.51	
修補錢	1865~1869	1.37~5.03	
邑稟古代錢	1866	1.11	
邑軍需	1869~1875	5.4	
統座船貨價錢	1870~1877	0.3~3	
書院畜放賣錢	1872	12.87	
南在船貨價	1876	0.2	
面查徵	?		
邑賞格錢	?	1~2	
口米代錢	1879		800
軍布俵殖錢	1880		2,200
鄉約錢	1901		51
官捐錢	1905	17	1,000여
契房錢	1905	30	

냥의 돈을 보태 총 800냥을 만들어 당해년인 1879년 7월부터 1881년 6월까지 월

포(軍布俵殖錢·鄉約錢·官捐錢) 등 부세·잡역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임 대부분이었다. 명목별 주요 동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口米代錢은 식년 단위로 소요되는 호적개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1879년 거제부사는 倉色輩들이 환곡으로 빼돌린 700여 냥을 屬公하여 '한 읍 사람들 공공의 폐단(一邑人公共之弊)'인 口米錢을 충당하고자 했다. 하지만 1,000냥에 달하는 口米錢을 屬公錢 700여 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거제부는 100

우도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수가 궁박판매였다. 물론 1909년 황성립의 경우와 같이 마을의 공적인 의례인 洞祭를 위한 부지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었다. 운용과정에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화폐보다 토지형태의 洞財가 자산운용상 보다 안전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경우 동답을 팔아 수입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1829년 項員田을 治洞畜을 각각 39냥과 29.5냥에 방매한 것[『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이 그 예이다.

5%의 이율로 각里에 분급, 식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이자 960냥은 일단 식년인 1882년 호적개수 비용에 충당하고 1881년 7월부터 연 40% 이율을 적용하여 이후 식년의 호적개수 비용으로 쓰고, 口米代는 없애도록 하였다. 거제부사는 이 조치를 ‘全邑의 무궁한 一大 救廢’라고 하면서 이를 관내大小民人에게 알리도록 하였다.<sup>59)</sup>

둘째, 邑鎮便分錢과 邑立馬錢은 거제부와 인근 수군진의 재정을 위해 조성된 항목으로 1847년 김우철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리운영된 것이 처음 나타난다. 邑鎮便分錢의 경우, 같은 해 12월 기준 읍면분전은 본전 0.85냥에 이자 0.26냥으로 총 1.11냥, 지세진면분전은 본전 2.88냥에 이자 0.87냥을 합하여 총 3.75냥이었다. 이를 합한 邑鎮便分錢의 액수는 4.86냥이었다. 이듬해인 1848년 읍면분전 1.45냥(본전 1.11냥+이자 0.34냥)과 지세진면분전 4.88냥(본전 3.75냥+이자 1.13냥)을 합한 邑鎮便分錢 6.33냥은 金興福이라는 사람에게 분급되었다. 1850년 邑便分錢은 邑雇價錢·邑別備錢, 知世鎮便分錢은 知世鎮雇價錢·知世鎮貨價, 邑立馬錢은 邑雇價錢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운영되었다. 邑立馬錢은 1848년 본전 0.8냥에 이자 0.56냥을 합한 총 1.36냥으로 朴千金이라는 자에게 분급되었다.<sup>60)</sup>

셋째, 1854년 거제에 파견된 암행어사는 災結 90결 63부 2속을 偷弄한 서원배를 처벌한 후 이들에게 당해년 結價를 기준으로 결당 18냥씩 징수하여 모은 1,631.4냥에 1851·1852·1853의 3년간 海稅를 濫捧한 균역색에게 1인당 100냥씩 추징하여 만든 300냥을 합하여 총 1,931.4냥을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50냥은 고마청의 寛徵捧으로 出給되었고 702.36냥은 柴租太穀豬糠年分租의 당해년분을 防給하는데 쓰도록 하였다. 나머지 1,179.04냥은 吏校·奴令廳과 함께 ‘山底12洞’의 頭民에게 大洞 30냥, 小洞 20냥씩 직접 분배하여 存本取殖하도록 하였다. 바로 암행어사추징전이다.<sup>61)</sup> 암행어사추징전은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거제부의 재정에 보태는데 쓰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59) 『己卯七月日一運面項里完文』(『고문서집성』 35, 580-583면).

60)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61) 『절목』(『고문서집성』 35, 절목8, 84-85면).

넷째, 官捐錢이다. 1904년 이임을 앞둔 거제군수 權重勳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고 教化·賦稅·詞訟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月俸錢을 출연, 문자 그대로 1,000여 냥의 官捐錢을 마련하였다. 관연전은 호당 1냥씩 각里에 분배,

〈표 5〉 官捐錢의 식리운영방식

연도	대출기간	본전	이자	합금
1905	1~6월	17	5.1	22.1
	7~12월	22.1	6.6	28.73
1906	1~6월	28.73	8.62	37.35
	7~12월	37.35	11.21	48.56
1907	1~6월	48.56	13.57	62.23
	7~12월	62.23	18.64	80.77
1908	1~6월	80.77	24.24	105.01
	7~12월	105.01	30.51	136.52
1909	1~6월	136.52		

1905년부터 5년간 取殖하여 春秋戶布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구조라에는 17호에게 호당 1냥씩 분급되었다. 1909년 이후에는 호포전을 거두지 않아도 되었다. 관연전의 식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전반기는 30%의 이율을 적용, 5.1냥의 이자를 확보하여 이를 회수한 원금과 합해 총 22냥을 마련한 후 이를 다시 30%의 이율로 식리한 6.6냥의 이자를 원금과 합해 1년만에 총 28.73냥까지

불려 나가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1909년이 되면 총액이 136.52냥까지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호포전 25.5냥을 제외한 111.02냥을 매년 6월·12월 두 분기로 나누어 연 40% 이율로 취식, 분기당 호포전 25.5냥을 납부하고 나머지 자금은 본전에 보태 계속 식리하도록 하였다.<sup>62)</sup>

이같은 방식은 계방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05년에는 계방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作廳公契'에서 구조라에 배정한 70냥 가운데 40냥을 1907년 2월 還受하고 남은 30냥을 연 40% 이율로 取殖하여 1월과 7월에 거두도록 하였다.<sup>63)</sup> 거제부의 이서조직을 통한 식리였다. 특히 1860~1870년대 새로운 항목의 식리전

62) 『항리관전령급관연전표식성책』(『고문서집성』 35, 289-293면). 호포 부담은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듯 이미 1901년 鄉約錢 51냥이 조성되어 17호에 호당 3냥씩 분배하여 연리 40%로 40개월의 기간으로 식리운영하여 호포전을 충납하는데 쓰여진 바 있었다[『항리향약전표식성책』(『고문서집성』 35, 286-288면)].

63) 『작청공계전항리표급완정책』(『고문서집성』 35, 294-295면).

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종래부터 운영되었던 것과 신설된 것이 섞여 있는 듯하다. 1861년 御使查徵(25.9냥) · 邑船所別備錢(7.51냥), 1865~1869년 修補錢(1.37~5.03냥) · 面查徵(연도 · 액수불명), 1865~1873년 邑賞格錢(1~2냥), 1866년 邑薰古代錢(1.11냥), 1869~1875년 邑軍需(5.4냥), 1872년 書院畠放賣錢(12.87냥), 1870~1877년 統座船賃價錢(0.3~3냥), 1876년 南在船賃價(0.2냥) 등이 그것이다.<sup>64)</sup>

〈표 6〉 1883년 洞錢과 公錢 내역

항목	洞錢	公錢	항목	洞錢	公錢
漕掠弊錢	8.82	10.5	同人錢	3.15	
巡別炮錢	1	1	乙酉利條		
賞格錢	1	1	太一石代	1.5	
統座船賃價錢	0.3	0.3	軍需錢	5.46	
懲悅錢	2.64	2.64	御使查徵錢利條	1.14	
邑先生賄儀錢	1	1	面查徵錢利條	0.46	
口米錢	5	5	正米和代		40
軍布錢	20.92	20.92	兵和毛代		11
山城米代錢	22.64	22.64	正和不足條		2
雇價立馬兩合錢	3.35	3.35	別神下		10
山城太一石代		2.5	합계	78.38	133.85

\* 자료: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各樣公錢捧上冊』(『고문서집성』 35, 206-214면)

한편, 구조라에는 洞錢 이외에 公錢으로 불리우는 범주가 있었는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는 상당수가 겹친다(불드체 항목). 총액은 공전이 133.85냥으로 동전의 78.36냥보다 훨씬 커서 공전에 동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의 부분성으로 단언하기 힘들다. 공전의 별신제 관련 지출도 동전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양자의 차이를 굳이 따진다면 동전은 식리를 위한 기금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반면 공전은 환곡과 같은 부세항목이 많다는 정도이

64)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다. 동전과 공전은 서로 다른 범주라기 보다는 아마도 동종에서 운영하는 화폐 자산을 상황에 따라 달리 부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洞錢이건 公錢이건 중요한 것은 개별용도를 가진 각종 항목의 기금이 동종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洞錢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1826~1834년, 1866~1881년, 1910~1914년의 세 구간의 것이 남아있다. 작성원칙이나 기재방식이 둘쑥날쑥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고 구조라에 분급된 식리전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동전 운영의 전반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더듬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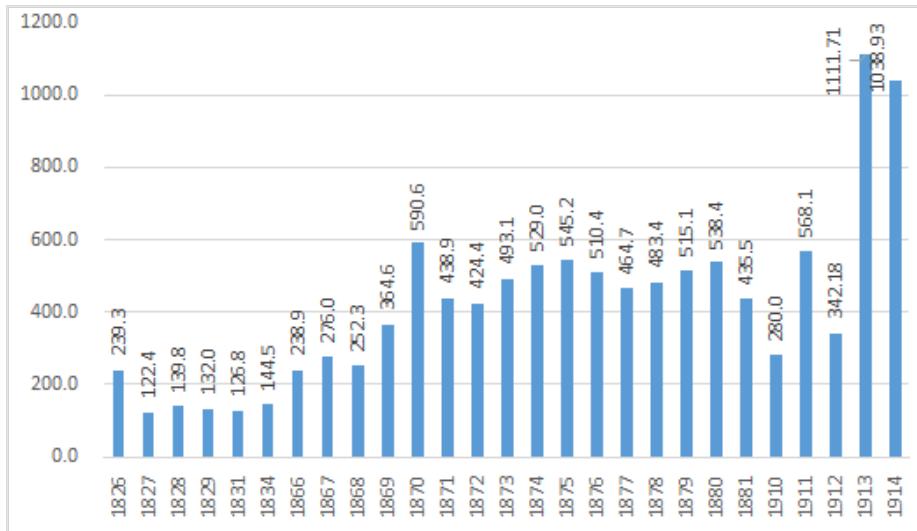
〈그림 2〉는 동전의 명목으로 나타나는 액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편의상 已上錢만을 대상으로 삼았다(1913년과 1914년은 하반기 수치).<sup>65)</sup> 그래프를 보면 19세기 전반 1826년 239냥을 기록하던 동전의 액수는 이후 하락해 120~140냥 대를 유지하다가 1835~1865년의 자료 결락기를 거쳐 1866년 200냥대로 증가하고 1880년 538.4냥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후 액수는 점진적으로 저하하다가 1882~1909년의 자료공백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sup>66)</sup> 장기추세를 보면 洞錢의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를 감안한 화폐의 실질가치를 따진다면 반드시 그러하다고 할 수도 없다.<sup>67)</sup> 이에

65) 已上錢 외에 實在錢은 1826년 138냥, 1827년 90.53냥, 1828년 92.11냥, 1829년 38.98냥, 1836년 113.1냥으로 나타난다.

66) 그래프는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동전유재치부기』(『고문서집성』 35, 296~312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누락된 정보는 기록상의 불완전 때문인지 동전운영상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여타 항목의 각종 식리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1882년 이후 1909년까지 정보의 누락은 1879~1881년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환전의 운영[『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7) 이러한 점은 비슷한 시기 장흥 상금리 書契의 지출사례가 참고된다. 서계의 지출은 20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상승했지만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이를 租로 환산해보면 19세기 연평균 조 10.3석 정도에서 20세기에 연평균 6.3석 정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김건태, 2010 앞의 글, 311면). 이는 20세기 초 급격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洞錢 액수가 실질가치를 감안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상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구조라 동전의 경우도 구간별 물가동향의 구체적 변화양상은 달랐겠지만 화폐실질가치 하락 추세는 공통된 현상이었을 것으로 생

대해서는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일정규모의 동전이 꾸준히 유지·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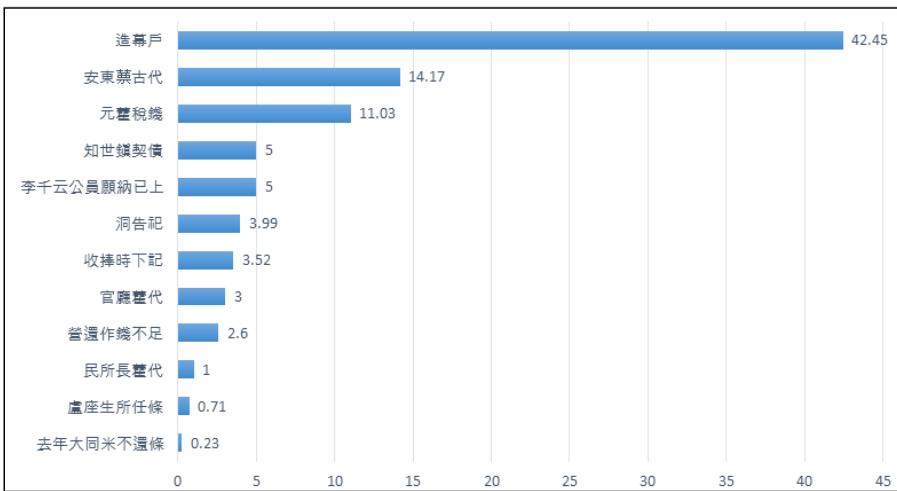


〈그림 2〉 1826~1914년 洞錢 액수의 추이

한편, 동전관련 치부책에는 불완전하나마 지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洞錢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3〉은 1826년 동전의 지출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조라의 동전지출에서 보이는 특징은 통영에서 부과되는 잡역이 46%(42.5냥), 진상이 31.5%(29.2 냥)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동중행사, 동임의 인건비, 부조 등 마을 자체의 비용은 각각 7.1%(6.6냥), 6.2%(5.7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타 洞의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동전운영의 중심이 부세·잡역 충당에 있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sup>68)</sup>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각된다.

68)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그림 3〉 1826년 洞錢의 지출내역

우선, 통영으로부터 부과된 잡역은 온전히 造幕役('造幕戶')에 지출한 항목으로 42.45냥에 달한다. 이는 전체지출의 46%에 달하는 비중으로 1828년 조막역을 둘러싸고 구조라를 비롯한 망치·양화 등 세 마을이 집요하게 전개한 등소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sup>69)</sup> 조막역 분쟁이 있었던 해에는 '造幕事載完文下記'라는 명목으로 11.5냥이 지출되는데서 보듯<sup>70)</sup> 관련 완문의 발급 비용도 洞錢에서 지출되고 있다. 다음, 전체지출의 3할을 약간 넘는 '진상' 항목은 과세전과 표고대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또한 '산저 12동'의 일원이었던 구조라가 粟古不產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그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sup>71)</sup> 표고진상은 1829년 두 분기에 걸쳐 別進上의 형태로 38냥을 지출하고 있다.<sup>72)</sup> 蕤稅·蘤代도 洞錢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홍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에 수군진·대동 등의 범주로 들어가는 소소한 지출이 있다.

그런데 마을자체의 지출로 동중행사나 동중직임에 대한 인건비·부조 등과 관

69) 조막역과 관련된 등소운동에 대해서는 송양섭, 2021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대동문화연구』 94 참조.

70)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71) 구조라를 비롯한 '山底12洞'의 표고진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송양섭, 2021 앞의 글 참조.

72)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련된 비용은 洞告祀 3.99냥, 盧座生所任條 0.7냥, 李千云公員願納已上 5냥 등에 불과하다. 개별 항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洞告祀 명목은 1827년에도 2.97냥을 洞神時食床價 0.3냥과 함께 지출하고 있다.<sup>73)</sup> 기타 분야는 주로 부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 때 대동답 4두지와 姜周翁畊 1斗只를 洞錢 60냥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洞財가 錢에서 토지로 바뀌었을 뿐 순수한 지출로는 보기 힘들다. 이후 시기인 1866~1868년의 지출사례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74)</sup>

- 1866년 3월: 別下 5.03냥, 番錢 4.4냥, 懇悅庫 利子 0.4냥, 盧座上賄儀錢 2.4냥, 盧文植畊 3斗只 매입가 4.4냥 등으로 내용불명의 별도지출(別下)과 番錢이 두드러진다. 洞畊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 1867년 3월: 우선 거둔(爲先捧) 101.71냥 가운데 倭白米防納條 14.84냥, 三人番錢 6.6냥이 부세관련 지출이고 동중의 쓰임으로 생각되는 항목은 洞告祀下 5.5냥, 正月日洞告祀下不足 1냥, 店下 1.5냥, 金士仁勸文條 2냥, 大洞時酒家 1.8냥, 李小出勸文條 3냥 등이다. 기타항목으로 賞格錢利條 0.5냥이 있고 56.89냥의 洞錢이 田畊價로 지출되고 있다. 마을내 행사와 관련된 지출도 잡다하게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군역이나 외교재정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높다.
- 1867년 9월: 우선 거둔 37.05냥 가운데 지출항목은 親兵軍頤給條 25냥, 還米三石代 9냥, 洞告祀洞告祀下不足條 0.43냥, 大洞時酒價 1.74냥, 堂告祀下 0.88냥 등이다.
- 1868년 3월: 洞徵番錢除 6.6냥을 비롯한 잡다한 지출 중 부세·잡역 관련 비중이 주를 이룬다.

한편, 동전의 관리와 운영은 존위와 공원이 담당했다. 주로 ‘時尊位前留在’ · ‘時尊位處留在’라는 형태로 존위의 명의로 보관되고 출납실무는 공원이 맡았던 것 같다. 頭民도 일정한 역할을 한 듯 하다. 운영은 동중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在公議減給’ · ‘公議減’ · ‘公議減下’ 등의 동전 상환액 감면조치가 그것이다.<sup>75)</sup> 마을의 장로에 해당하는 존위의 관할 하에 공원이 동전 식리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73)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74)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75)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표 7〉 1866년 동전수급자의 1863년 호적상 존재양태

이름	분급액(냥)	호내위상	호내구수	연령	직역	주호직역
장진선	33.41					
김계찬	1.03	손일자	6	22	유학	유학
노상량	29.15	술일자	4	32	충의	충의
정종수	1.3	주호	4	48	업무지세군관	
노방률	11.7	일자	6	22	무직역	무직역
김찬이	1.14					
노갑준	6.59					
김우철	1.08	주호	2	58	유학	
장도건	1.3					
장백년	49.95	주호	2	20	유학	
이소출	1.21					
박성록	3.25	주호	3	27	황조인	
장성인	11.7					
임성권	1.18					
박덕준	1.29					
황상욱	0.5	주호	2	44	공생	
노원철	1.18	주호	2	40	충의	
이석도	21.75					
노업이	8.2					
노문식	24	술일자	4	38	무직역	충의
이익원	0.65	주호	3	21	무직역	
강권이	20	술일자	5	29	무직역	업무조라사부
장도권	15	주호	3	37	업무방군	
황부욱	9.25	주호	3	43	공생	

\*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항리호적증초』(『고문서집성』 35, 16-29면).

\*\* 연령은 호적상 연령에 3을 더한 값이며 음영은 호적미등재를 의미함.

동전분급의 구체적인 양상을 어떠했을까? 〈표 7〉은 1866년 동전분급내역을 1863년 호적과 대조한 것이다. 우선, 동전수급자 24명 가운데 14명만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호내위상~주호직역이 음영처리 된 사람은 호적 미등재자). 이것이 3년의 시간적 격차나 改名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문서가 별도의 기준에 의해 작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인 동전의 분급은 호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듯하며 호적등재 여부와 분급액수간의 연관관계도 찾아지지 않는다.

우선, 동일 戶에서 중복수급자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전분급은 개인이 아닌 戸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전과 관련된 성책은 모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분급대상은 家戶였던 것이다. 이들의 직역은 어떨까? 49.95냥을 분급받은 장백년은 幼學이었으며 노상량은 忠義(분급액 2.15냥), 그리고 노문식(분급액 24냥)은 忠義 직역을 가진 주호의 솔구였다. 반면 업무방군 장도권(분급액 15냥)은 업무방군, 솔구인 강권이(분급액 29냥)는 주호의 직역이 업무조라사부였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동전수급자는 대체로 중상위 직역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아무래도 이들의 동전상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동전수급의 명의는 대체로 호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성년 남성을 올린 듯 하다. 호내 구수가 많은 김계찬(6명) · 노상량(4명) · 노방률(4명) · 노문식(4명) · 강권이(5명)는 호내위상이 모두 솔구였다. 가령 김계찬은 22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조부 김홍복(93세)의 솔구였다. 아마도 그는 역시 솔구인 44세의 부친 김성윤을 이어 명의를 물려받았을 확률이 크다. 노상량의 경우에는 1남이 있지만 나이가 10세에 불과했고 노방률 · 노문식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호인 정종수의 경우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동전의 분급이 호 단위로 이루어지면서도 명의 자체는 主戶나 家長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이들 동전수급 대상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령 김계찬은 1873 · 1874 · 1875년, 황부욱은 1849년 公員을 맡았으며<sup>77)</sup> 박성록은 1866년 공원이었다

76) 나머지 호내 구수가 2~3명인 경우, 예외 없이 주호의 명의로 동전을 수급하고 있다. 김우철호와 노원철호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호이고 장백년은 형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동생의 나이가 18세였다. 부자로만 이루어진 황상욱호는 아들의 나이가 10세였다. 박성록 · 장도권 · 이익원 · 황부욱의 경우 모두 부부와 1남으로 구성된 호에 소속되었는데 주호 밑의 솔구 가운데 성년의 남성이 없을 경우 주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솔구가 명의를 올렸다. 박성록과 장도권은 아들의 나이가 각각 13세 · 19세였고 이익원은 21세로 아버지 이치근을 대신해 명의를 올리고 있다. 다만 황부욱은 솔하에 조카 황맹준을 두었는데 23세임에도 명의를 올리지 않고 있다. 성년남성이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었던 듯하다.

77)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邑鎮兩處便分錢分記』(『고문서집성』 35, 160-205면).

가 1871년 존위가 되었다. 노업이는 1865년 이임을 맡았다.<sup>78)</sup> 아마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동중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상량·노갑준·김우철·장백년·장성인은 선박소유자로 확인되는데<sup>79)</sup> 아마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부류였을 것이다. 이 가운데 노방률·박성록·황부욱 등은 앞서 언급한 정갑출 투장사건으로 인한 등소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다.<sup>80)</sup> 동전분급 대상자는 동중의 주요 직임을 맡았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류였다. 동중의 주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동전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洞錢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동전의 상환불능이나 연체 때문이었다. 1886년 동전을 대출받은 李用柱라는 자는 제주도 사람으로 구조라에 잠시 머물렀을 뿐 3년째去處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sup>81)</sup> 전 2.61냥을 대출받은 임능제는 구조라에 원래 살지 않고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거주지인 서문리로 넘어갔다.<sup>82)</sup> 1888년에는 표식전 50.8냥을 빌린 삼거리의 정학준이 도주해버리자 6촌 정준석·정제갑 두 사람이 빚을 떠안고 있다.<sup>83)</sup>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867년 장도권과 장백년은 집터를 담보로(家垈執質) 각각 2.2냥, 84.07냥을 마련하여 동전을 상환하였고 1867년 3월 노업이는 자신의 田을 10.65냥의 값으로, 강필권은 자신의 畦을 10냥의 값으로 洞中에 납부하였다.<sup>84)</sup> 1904년 강달주는 자신의 家幕 3칸을 저당 잡혀 洞錢을 대출받고 기한 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저당을 洞中에 넣어 시가에 따라 방매하기로 하였고<sup>85)</sup> 1909년에도 사망한 아버지가 빌려 쓴 '洞中契錢'을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家垈를 洞中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표가 남아있다.<sup>86)</sup>

78)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완의·입의」(『고문서집성』 35, 606면).

79) 『서목』(『고문서집성』 35, 494면).

80) 『동전봉상기』(『고문서집성』 35, 112-159면); 「등장」(『고문서집성』 35, 569면).

81)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2면).

82)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5면).

83)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96면).

84)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85) 『수표』(『고문서집성』 35, 636면).

86) 『수표』(『고문서집성』 35, 638면). 일본거류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돈을 차용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액수를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1869년 3월 장성인은 본전 36.22냥 가운데 9.8냥을 납부한 나머지와 1870년 장도권도 본전 99.66냥 중 15냥을 납부한 나머지, 같은 해 이도석의 경우, 129.18냥 중 20냥을 납부한 나머지를 ‘公議’로 減給한다고 되어 있다.<sup>87)</sup> 형편이 나아지면 방매한 전답을 還退하기도 했다. 1868년 畦을 10냥 값으로 납부한 노업이 · 노문식은 1873년 이를 還退하였고 같은 해 9월 비슷한 처지인 강장국도 15냥을 내고 田畦을 還退하고 있다.<sup>88)</sup> 한편, 1867년 구조라의 京費錢 59.89냥 가운데 7냥을 風憲 玉華白이 몰래 犯用하여 본전과 이자를 합한 13.51냥을 추징하고 있었던 데<sup>89)</sup>서 보듯 실무 선에서 저질러지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왕조정부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법안과 규정을 반포해나갔다.<sup>90)</sup> 1896년 거제군에서는 ‘백성을 편하고 이롭게 한다(便民利民)’는 명분 하에 위로 ‘貢獻之節’과 아래로 ‘俵殖之流’를 없애 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시책을 펴고자 하였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만들어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던 각종 식리 전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되었다. 갑오개혁기인 1896년 거제에 파견된 査員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新章에 규정한 혁파 항목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거론하지 않는 것[存而勿論者]이 있고 숨겨서 그대로 둔 것[隱而仍存者]도 있고 이미 본전을 뽑아버린 것[已爲拔去者]

---

경우도 있었다. 1909년 황성문은 일본인 山內라는 자에게 차용금 75냥을 이자와 함께 계산하여 기한내 갚지 못하면 집앞 洞基 외 나머지 땅을 영구히 허급할 것을 약조한 것이 그 예다[『표』(『고문서집성』 35, 637면)].

87)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88) 『洞錢捧上記』(『고문서집성』 35, 112-159면).

89) 『서목』(『고문서집성』 35, 540면).

90) 갑오개혁기 조세 · 재정의 제도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찬, 1989 「1984~5년 지방재정제도 개혁의 방향: 향회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7; 송찬섭, 1992 「갑오개혁기 결세제도의 개혁과 환곡제의 변화」 『역사연구』 1; 유정현, 1992 「1894~1904년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과 이서충 동향」 『진단학보』 73; 왕현종, 1992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 『한국사연구』 77; 김재호, 1997 「갑오 개혁 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도 있고 장차 본전을 뽑아버리려 하는 것[將欲拔本者]도 있으며 이미 거둔 것[已捧者]도 있고 아직 거두지 않은 것[未捧者]도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俵殖의 부류이다. 기타 규례에 따라 거두고 사안에 따라 거두는 것은 처음부터 거론하지도 않았다.<sup>91)</sup>

存置·本錢拔去·收捧 등의 여부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얹혀있는 식리전이야말로 지역사회의 현안이자 골칫거리로 갑오개혁의 지방재정에 대한 시책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식리전은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새로운 법과 행정력만으로 일거에 개혁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거제부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대개 朝家의 盛德은 지극하다고 할 만한데 어찌하여 煩弊를 없애지 않고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는가? 紂法이 寬濫하여 이서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니 … 백성들이 원망하여 소리치는 情狀이 오히려 岐廉의 길에 들리고, 떠들썩하게 지르는 소리가 告訴의 門에 끊이지 않는다. 이어서 亂民이 선동하고 愚民이 이를 본받는데도 관에서는 소요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것을 싫어하니 들에 失農의 탄식이 있다.<sup>92)</sup>

식리전을 없앤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이와 이해가 얹힌 자들은 불만을 품고 관에 송사를 하는 등 거제의 지역사회는 매우 시끄러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亂民'이 선동하고 '愚民'이 가담하여 소요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사태는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사태를 보고받은 경상관찰사는 査員 徐鳳年을 거제에 특파하여 실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복잡다기한 지역의 식리전을 일거에 개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리운영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서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촌락민들은 이 상황을 식리전을 없앨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상관찰사는 사안을 잡음없이 처리할 요량으로 結戶 이외에 혁파할 106개 조항을 정리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의 '土流'들이 백성을 모아 作亂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거제군수 李建祿은 '백성은 나라의

91) 『巨濟郡民斂錢區別完文成冊』(『고문서집성』 35, 595-604면).

92) 『완문』(『고문서집성』 35, 595-604면).

근본인데 그 근본을 흔들 수 있겠는가?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公인데 그 公을 사사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서배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土流'의 '亂魁'들을 곱게 본 것은 아니었다.

亂魁의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몸은 鄉列에 있고 이름은 土流라고 하면서 操志律己하는 것이 마땅히 小民과 다름이 있어야하나 乖悖한 행동이 도리어 小民보다도 못하고 亂魁라고 지목받는 것을 즐거워 하니 대저 禮의 大本은 亂을 막기 위함인데 이 무리들이 평소의 행동거지는 진실로 불만한 것이 있음에도 어찌 亂을 貨竇로 여기고 禍를 權柄으로 삼는가?<sup>93)</sup>

구조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土流'로 불리우는 자들이 식리전의 운영과 관련하여 小民들을 이끌고 관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土流作亂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의 추이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갑오개혁의 조치가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문제가 된 이서배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 때 그대로 존속시킨 항목, 즉 '應納秩'은 結錢 결당 30냥과 戶布錢 호당 3냥으로 이를 제외한 書員筆債 · 面主人路貲 · 獄鎮匠은 거두는 액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잠정적으로 남겨놓은 '姑置秩'은 軍需本錢 · 火巫稅 · 別砲畜 · 漁條錢 등이 있었다. 軍需本錢의 경우, 1,020냥 가운데 반인 510냥은 그대로 식리운영하고 나머지 510냥은 없애도록 하였다. 火田稅와 巫稅를 합한 火巫稅 총 미 115석 2두2도는 탁지부에서 석당 10냥씩 執摠해갔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240두락에 달하는 別砲畜도 京部에서 執去해가기는 했지만 일단 別砲軍에게 그대로 경작하도록 하였다. 漁條錢은 읍에서 구관하여 京部로 상납하는 것 외의 나머지는 호포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거제부 '民斂錢'에서 革罷秩로 분류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93) 『巨濟郡民斂錢區別完文成冊』(『고문서집성』 35, 595-604면).

補役錢名色 均廳無亡船稅錢 各項採弊錢名色 冬夏防錢名色 新補餉錢名色 還代錢名色 射賞錢 八夫錢 漁商錢 新延支裝馬駄 巡營春秋納雜物 晉州弓槊木柯柴木 烽軍立番錢 春秋等燒木錢 軍布錢 疏筭錢 人口錢 延逢卜馬代錢 蕎古錢 四府藥債錢 農形雨澤錢 結錢元納外戶首雜費 刑房廳稷房米三十石及各例納物種 歲末勘錢 陪持錢 新定朝報債 朝報債 京各司筆債禮木等錢 扇子竹代錢 火藥錢代錢 蕎羊毛代錢 負持錢 焰硝代錢 重記錢 軍餉穀 各營主人及京主人矯掠 巡射木錢 兵料錢 貢參錢 貢繩 官婢萊蔬錢 各營進上及勘債錢 狀頭民各色等下記排斂 配人糧米 倉庫子例納 牛皮錢 各廳殖利各洞分排條倉磨勘及雜納 杖房拘留債 刑具錢及新延別刑具錢 水軍老頤勘錢 戶長禮木錢 親兵錢 各軍官番錢 京各司上納 補民庫色庫 京上番庫路子 巫夫番錢 倉空石債 東軒內衙修理木役條 路傍洞炬火 祈雨祭下記 面主人饒氣及酒草鞋 差使足貰及酒草鞋 官行次各樣供饋 鄉民會下記排斂 摘奸校吏馬貰及供饋 檢督吏校及跟捕將羅馬貰供饋例給 各樣勸善及請助遊街 各場市監考 詳定都監名色 戶籍都監及籍有司名色收單 場市各稅 面主人納各果及真莊 戶籍收捧時例錢及勘情 各納情馳及勘情 各洞無土徵還起卜(自邑措處) 邑人籍所捧單例錢 面錢·洞錢(殖利條) 京各部各營府郡出使捕卒下記 各處草料供饋 獵狗匠供饋飢口時下記 大小站支供 考卜下記 親軍營納三手糧米 沁都砲糧米 戶曹納結錢 邑徭役錢 承發公事債 司僕寺分養馬代錢 烽軍錢 硫礦軍錢 各匠人錢 都界首役價 水軍歲抄磨勘錢 黃簽錢 兵營歲抄磨勘錢 各營各司年戶籍勘錢 各營鎮式年水軍改都案債 水營水軍改都案債 別炮出使 面主人例□□債 七牧場賭地

1896년 혁파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지출목적별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던 갖가지 식리전으로 대부분 부세·재정이나 이와 관련된 잡비 등이었다. 동리의 자치적 사안과 관련된 식리전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洞錢이나 面錢 등도 대부분 관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당시 사류들의 소요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혁파질이 그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다. 이후 자료에도 혁파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19세기 지역에 대한 부세·잡역의 압력이 가중되자 촌락사회는 스스로 공유재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기에 이른다. 구조라의 洞錢도 이와 같은 형태로 대부분 거제부가 본전을 출연, 면리별로 식리 운영되었다.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각종 식리전은 洞錢 또는 公錢으로 뮤여져 洞中에서 통합 관리되었고 이는 20세기 초까지 일정액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전의 지출은 대부분 조막역·진상 등 부세·잡역 항목으로 마을자체를 위한 것은 비중이 매우 작다. 존위·공원 등이 관리한 洞錢은 호 단위로 분급되어 호내

에서 가장 나이어린 성년남성의 명의로 분급되었다. 동전분급은 洞任을 맡았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동전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다.

洞錢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 실무자의 부정이나 동전의 상환불능·연체로 인한 것이었다. 한편,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리전 혁파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둘러싸고 거제에서는 범법을 저지른 이서배들의 책임 회피와 지역민의 항의로 소요사태가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이 때 존속시키거나 잠정적으로 남겨놓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리전을 혁파하도록 하였는데 혁파질에 들어간 식리전 항목도 대부분 부세·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동리의 자치적 사안과 관련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식리전이 이후에도 상당수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리전 혁파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동전운영이 동중의 핵심적 업무로 자리 잡고 있음은 동전을 매개로 한 관권의 촌락사회에 대한 개입과 침투가 거의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 4. 洞錢의 운영과 기능변화: 軍布俵殖錢의 사례

19세기 중엽 거제부의 三政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생민의 뼈를 에이는 근심(生民切骨之患)’이자 ‘司牧이 차마 하기 어려운 정사(司牧難忍之政)’로 민의 泣訴가 끊이지 않았던 군역의 문제였다.<sup>94)</sup> 거제부에 부과된 役摠은 18세기 중앙의 군문·아문의 액수가 점차 감소하여 19세기에 접어들면 지방기관 소속 役種이 주를 이루게 된다. 구조라 마을민 직역의 최소 50% 이상은 지세·조라·옥포·영등 등 4개진에 소속되어 있었고 중앙군문·아문 소속 군역·신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제부·목장·통영 등에 소속된 직역은 10~20% 정도였다.

19세기 중엽 구조라의 逃亡·老除·物故 등으로 월액이 발생하면 민이 관에

94) 『항리방군안(절목)』(『고문서집성』 35, 86-88면).

알려 해당 색리가 閑丁을 찾아 채워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863년 거제부사는 대대적인 查括을 바탕으로 里定法을 실시하였다. 당시 軍籍의 虛簿化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項里防軍案」(1863)에 등재된 30명 중 1명이 老除, 18명이 物故, 4명이 他役移定者로 액면 그대로 본다면 나머지 7명만이 실역이나 군포를 부담한 셈이었다. 군안에 등재된 구조라 방군 30명 중 호적 중초에 등재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7명은 군안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호적에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군안에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는 3명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sup>95)</sup>

이러한 가운데 1871년 호포법 실시로 군역은 이제 완전히 부세항목의 하나로 변모한다. 호포는 문자 그대로 호 단위로 징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상당수는 군역 전이나 군포계와 같은 재원을 운영하여 충당되었다.<sup>96)</sup> 거제의 군포전은 上·下納을 통틀어 총 6,400여 냥에 달했는데 그 수취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戶에 배정하고 家를 계산하여 하나하나 거두되 貴賤을 나누지 않고 여기에서 덜어 저쪽에 채우니 奸偽가 따라 생겨 家戶가 감축되고 虛實이 섞여서 錢數가 늘어나 편파적인 고통이 또한 심하다. 이 때문에 從實의 방안도 議論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헐한 쪽으로 가려는 情狀에 이같은 圖避를 어찌하겠는가? 이는 전임자들도 미처 矯革하지 못한 바이다.<sup>97)</sup>

호포법 이후 호전징수 대상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온갖 농간과 속임수가 횡행함에 따라 家戶가 감축되고 허실이 뒤엉켜 호전의 액수가 늘어나 민들이 편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거제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1880년에 접어들어서였다. 이임이 임박한 거제부사 李泰權은 거제부의 잉여재원 2,000냥에 穩錢 200냥을 출연하여 2,200냥의 기금을

95) 이상 거제 및 구조라 군역과 『항리방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송양섭, 2014 앞의 글 참조.

96) 김용섭, 1982 「조선후기 군역제 이정의 추이와 호포법」 『성곡논총』 13; 西田信治, 1984 「李朝軍役体制の解体」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송양섭, 1994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67 참조.

97) 『巨濟郡民斂錢區別完文成冊』(『고문서집성』 35, 595-604면).

조성, 식리운영을 통해 군포전을 충당하고자 했다. 거제에는 전년도인 1879년 7월 홍수로 民家가 쓸려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재해가 닥쳤는데<sup>98)</sup> 이와 관련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금은 6년을 기한으로 가호 단위로 분급되어 연 30%로 15년간 식리운영(6年分俵15年取殖)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군포전을 충당함으로써 ‘貴賤混徵의 폐단’과 ‘貧富가 서로 섞이는 한탄’이나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단서’가 없는 ‘일거삼득의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거제부에는 수군진과 부속도서, 그리고 목장·역참 등도 있었다. 이들은 거제부민과 구별되는 존재로 각기 해당 기관의 역을 지고 있었지만 군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作隊錢을 부담하고 있었다. 거제부사의 입장에서는 이들도 방치해서는 안 되었고 ‘一視之政’에 맞게 分俵錢 전체의 1/10인 200냥을 이들에게 배당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sup>99)</sup>

分俵錢은 면을 거쳐 각 동리에 분급되어 마을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구조라에 배정된 액수는 20.92냥으로 ‘爲民掠瘼’의 취지에 따라 공정히 나누도록 각별히 강조되었다. 분표전의 운영은 기한을 정해 식리하는 방식(限年殖利)으로 상황에 맞게 봄가을이나 월별로 나누어 거두도록 하였다. 한꺼번에 거두어 한 곳에 유치해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용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이자의 잉여분은 민고 재원으로 넘기고 추가수요가 있으면 이를 쓰도록 하였다. 분표전은 浦稅錢 30냥, 旽乙魚稅錢 50냥을 납부하는 데에도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sup>100)</sup>

이 조치는 구조라에서 멀지 않은 늦태리에서도 확인된다. 늦태리에는 분표전 6.15냥이 배분되었는데 운영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자를 거두지 못한 곳은 洞任이 관에 보고하고 끝내 징수하지 못하면 三所任에게 징봉하도록 한 조치가 추가되어 있다. 늦태리의 이율 연 50%은 1886년부터 30%로 내리도록 하였다.<sup>101)</sup>

구조라에 분급된 군포표식전의 운영은 <표 8>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1880년 군포전 명목으로 배정된 20.92냥은 1880년 전반기 50%, 하반기 연리

98) 『승정원일기』 2865책, 고종 16년 7월 12일; 『승정원일기』 2865책, 고종 16년 7월 29일; 『승정원일기』 2845책, 고종 14년 12월 20일; 『승정원일기』 2877책, 고종 17년 7월 29일.

99) 『巨濟郡民斂錢區別完文成冊』(『고문서집성』 35, 595-604면).

100) 『項里軍布錢據弊俵殖完文』(『고문서집성』 35, 584-588면).

101) 『蘆台里官傳令及官損錢俵殖成冊』(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표 8〉 군포표식전의 분급과 식리

연도	본전	이자	합	연리
1880	20.92	6.276	27.196	50%(전반기) 30%(하반기)
1881	27.196	13.598	40.794	
1882	40.793	20.397	61.19	
1883	61.19	30.595	91.785	
1884	91.785	45.893	137.678	
1885	137.678	68.839	206.517	
1886	206.517	61.96	268.477	
1887	268.477			30%

\* 자료: 『軍布錢分民間分給』(『고문서집성』 35, 276-283면)

\*\* 단위: 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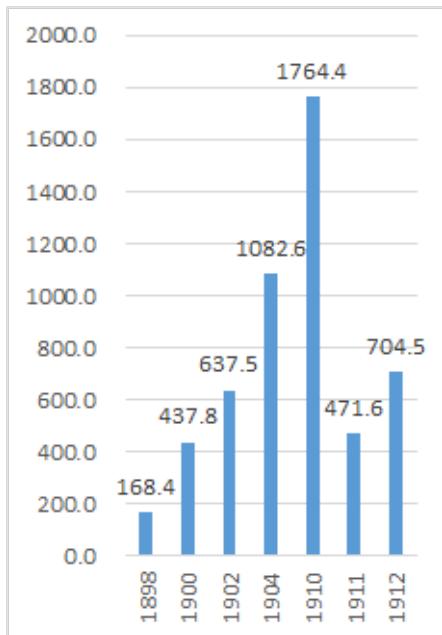
30%, 1881~1886년은 50%가 적용되었다. 계획대로라면 당 해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익년도에 복리로 계산되어 7년 만에 268.477냥까지 불어날 터였다. 실제 운영은 그리 순탄치 않았겠지만 단기간에 자금을 불려 각종 수용에 충당하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었다. 1883년 동중에서 운영하는 '公錢' 항목 가운데 군포전 20.92냥이 바로 1880년 구조라리에 배당된 軍布俵

殖錢의 本錢이다. 이 시점에 軍布錢은 어느 정도 불어났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있다. 군포전은 용도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도 洞錢 또는 公錢의 범주에 묶여 관리되었던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sup>102)</sup>

1880년 군포표식전 20.9냥은 구조라 마을 주민 91명에게 1인당 0.23냥씩 분급되었다(계산상 합은 20.93냥). 하지만 식리운영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던 듯 하다.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유옥 명의의 0.82냥과 정금석 명의의 0.82냥, 손계업 명의의 0.82냥은 1883년이 되어서야 납부되고 있다. 이희주 명의의 2.96냥과 이태필 명의의 2.96냥은 1887년, 하광주 명의의 2냥은 1888년, 박순홍 명의의 2냥은 1886년, 이성필 명의의 2.96냥은 1887년에 납부되었다.<sup>103)</sup> 군포전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이후 나타나지 않다가 1898년부터 다시 등장한다. 아마도 갑오개혁으로 지역의 식리전 명색을 모두 혁파하도록 한 조치로 군포표식전 운영이 한동안 주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96년 '혁파질'에 들어가

102)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면); 『各樣公錢捧上冊』(『고문서집성』 35, 206-214면).

103) 『군포전민간분급』(『고문서집성』 35, 276-283면).



〈그림 4〉 군포표식전 액수의 추이

한 화폐의 실질가치를 통해 보정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현상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어쨌든 20세기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에도 군포표식전이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분급방식도 특이한 형태로 변화한다. 〈표 9〉는 1902~1913년 군포전 분급대상과 액수를 정리한 것이다. 같은 시기 총 28명이 식리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처음 8명(1902)이었던 것이 이후 6명(1903)→6명(1904)→9명(1905)→8명(1906)→9명(1907)→6명(1908)→9명(1909)→7명(1910)→3명(1911)→3명(1912)→2명(1913)으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복수기재 동일인물도 개별취급).

있던 군포표식전은 없어지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4〉는 1898~1912년 군포표식전 액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자체가 그때그때 별도의 장부에 다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복잡한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총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7개 년 뿐인데 1898년 168.35냥이었던 것이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10년 무려 1,764.37냥에 달하였다. 하지만 강제병합 이후 군포표식전은 1911년 471.64냥 1912년 704.48냥으로 크게 줄어든다.<sup>104)</sup>

군포표식전 액수의 추이는 물가를 감안

104) 『軍布六年并本利區別記』(『고문서집성』 35, 221-238면).

〈표 9〉 군포표식전 분급 대상과 액수

성명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강문약									1342.4			
강성노								3	3			
<b>강영언</b>	300	285	427.5	641.65	961.87	1442.4	1442.4	1422.3	1422.4			
<b>강영언</b>	300					1						
김군직												
김균이	150											
김덕보	67.5	25.75										
<b>김용서</b>		15		4	19	10						
<b>김용서</b>				10		2						
<b>김용서</b>	10											
김주서	45											
김중겸 #				70	94.5	105	157.5	236.25	304.37	456.55	684.83	1027.2
김지보			1.5									
노익현								4.59				
노재율	130											
노태옥								4.59				
박수영				10	13.5	0.5						
박완석			9									
원사형								1.24	2.66	3.99	5.98	5.98
<b>이사집</b>		195	170									
<b>이사집</b>												
장익진				36	36	4	6	9				
정경언 #	313.41											
정남윤				407.11	603.61	603.11						
정여일					14.5	20.95	31.37	47.7	70.6	105.9		
최경재				45	67.5	101.61	151.87	227.8	341.3			
<b>최사침</b>									4.05	6.7	9.11	13.67
<b>최사침</b>	75											20.51
名數	8(7)	6	6	9(8)	8	9(8)	6	9	7	3	3	2

\* 『軍布六年并本利區別記』(『고문서집성』 35, 221-238면).

\*\* # 표시는 왜구거주자, 볼드체는 복수로 기재된 인물임. 名數의 괄호 안 수자는 중복기재자를 제외한 수치임.

1880년 최초 분급 시 마을주민 91명에게 0.23냥씩 분급되어 식리운영되었던 것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바로 소수의 인원에게 많은 액수를 분급하는 방식으로

의 변화이다. 강영언의 경우 같은 명의가 두 항목으로 나오는데다 1902년 600냥(300냥+300냥)을 분급받은 이후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1907~1910년 4년간에는 무려 1422.4냥을 배정받고 있다. 김중겸·최경재 등도 집중적으로 많은 액수를 분급받고 있는데 김중겸의 경우 왜구리 거주자라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이다. 강영언·이사집·최사침(2번)·김용서(3회) 등과 같이 동일인이 복수로 기재된 인물도 있다.

기재방식이나 액수가 실제 식리전의 분급과 회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 1911~1913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거니와 분급대상자의 점진적 축소, 그리고 많은 액수를 소수에게 몰아서 배정하는 방식이 분급명의의 형식화·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의 인물이 실제로 식리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현재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전라도 장흥의 어서리 동계는 응세조직으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구조라 동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식리전 수급자수의 변화가 어서리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되는 것이다. 어서리의 식리전 분급대상자는 錢有司라 했는데 그 인원이 19세기 20~40명을 오르내리다가 1903년을 기점으로 10명 까지 급감하고 1920년부터는 더욱 감소하여 1942년에는 2명만 남게 된다. 바로 ‘다수대부에서 소수대부로’의 변화양상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9세기의 다수 대부 방식은 동민 다수가 얹혀있기 때문에 체납·탕감 등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었고 많은 전유사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리의 중심 성씨인 이씨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洞民에게 錢有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동민 다수가 동계를 통해 저리대부를 받을 권리와 동계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다.

‘소수 대부’의 방식은 가급적 경제력과 신용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계전을 대부하여 계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대부금 원납이 늘어나고 탕감회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실제 개선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는 소수대부방식이 가지는 고위험성 때문이었다. 소수의 대부자(공사원)는 전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부하기도 했다. 동계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공사원에게 맡겼고 오직 약정된 금액을 회수하면 그만이었다. 대부대상의 선정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고 식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오롯이 공사원 개인에게 넘어갔다. 이제 계전 대부 과정에서의 공동체적 관계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sup>105)</sup> 어서리의 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포착되는 구조라의 동전분급방식에 동일한 내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음을 분명하다.

〈표 10〉 1898~1906년 동전의 지출내역

연도	항목	액수(냥)	연도	항목	액수(냥)
1898	酒散	6.5	1901	埋鬼下	17.7
	再洞	1.0		埋鬼下(尊位留內)	9.5
	風勸文	2.0		助羅書齋勸(尊位留內)	3.0
	李洛見·金玉川用	150		各公錢	200
	大門勸文	12.0	1902	別下	20
	洞告祀	10.0		別神下	32.65
1900	別神下	79.18	1905	刑所稟律債	10
	刑所契債	10.0		賭稅不足條	15
	洞釐稅	6.39		下介家垈	14
	長釐代	1.0		別下	?
	兩洞稅不足條	1.0	1906	大洞酒價	?
	鄉廳例租3斗代	2.4		金龍瑞旅客錢	18
	春戶布錢	25.5		風勸文	?
	埋鬼留置條來入	4		金辰玉口文錢	?

\* 자료: 『동전유재치부기』(『고문서집성』 35, 296-312면).

이제 군포전의 용도를 살펴보자. 〈표 10〉은 군포전의 용도별 지출이 일부나마 나타나는 1898·1900·1901·1905·1906년의 5개년을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군포표식전’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군포·호포와 관련된 지출은 그 비중이 매우 작다. 1898년의 경우 洞告祀와 같은 마을 차원의 의례나 風勸文·大門勸文과 같이 風教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지출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05) 이용기, 2011 앞의 글.

1900년에는 春戶布錢 외에 계방(刑所契債)과 여타 부세·재정(洞董稅·長董代·兩洞稅不足條·鄉廳例租) 등의 항목이 다수 보이지만 마을 내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別神下·埋鬼留置條·埋鬼 등으로 지출된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洞別神祭와 관련된 각종 물자와 인건비는 마을 자체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sup>106)</sup> 1901년에도 埋鬼·助羅書齋勸 등 마을내 의례나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 나타나고 1902년에도 各公錢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刑所稷律債 등 항목과 別神祭에 소요되는 지출이 적지 않다. 1905년과 1906년에 접어들면 이제 부세·재정과 관련된 항목은 보이지 않고 마을 자체의 각종 비용이 주를 이룬다.

〈표 11〉 1908~1915년 군포표식전의 지출내역

연도	지출내역
1908	大洞時酒價 10냥, 別神下 33.95냥, 道路修時酒 15냥, 書齋下記 14냥·조4두, 別下(貸給條) 106.93냥
1909	面主人路費 1.3냥, 別下 63.9냥,
1910	洞會時酒下 11.5냥, 洞基地改錢奉(洞慰地價 제외) 150냥, 夜望折於基地稅條奉 50냥, 橫井幕基稅奉 60냥, 長里兼鞋給 2냥, 曆書價給 0.5냥, 糖價給 1.9냥, 日下 19.41냥, 別下 36.72냥
1911	洞山側舊里費給 40냥, 別神時費用金不足條給 20냥, 山林條 10냥, 申告書紙價·斐紙價 26.12냥, 該基地價 250냥, 山林申請紙券代書費給 10냥, 別下 230.5냥, 各樣下條內京當 9.6냥
1912	兩洞共同山測費 15냥, 尹夏島毛董分爭 65.8냥, 城北山圖面分割費用 30냥, 森林印票價 30냥
1913	洞未來下 64.3냥, 別神時用(정월) 4.5냥, 伐木時酒下 136.7냥, 木計數雇價 2냥, 西洞貸付山捧印時下 2.1냥, 伐木時酒下 7.28냥, 金成西處貸用條并錢利報給 84냥 酒下 7.28냥
1914	盧泰玉別下除 1912·1913·1914 三年合中 187.3냥, 盧泰玉 1912·1913·1914 三年里長料除 125냥, 11.14냥(1911年里長別下除 2.8냥), 料金 6.67냥, 土地脫漏地查定下 5냥, 1913年金成西貸金不足除, 198.2냥(千乃淑1912·1913·1914 三年日下除)
1915	今年洞別下條上 144.1냥(1922년 3月7日 洞會議會計), 面內各面年度里長數料條上 170냥, 盧泰玉 11.8냥, 伐木雇錢 12.2, 別下出給中 1914年書堂學校改良時奇付上 110냥, 民籍正理下 7.82냥(1914년 散料年100分各價 盧泰玉別下出給中除去), 別下 41.3냥.

\* 자료: 『동전유재치부기』(『고문서집성』 35, 296-312면).

106) 이훈상, 2016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문화전통의 창출」 『진단학보』 127. 19세기 전반 별신제에 들어가는 내역은 대체로 술·떡·밥 등을 만들기 위한 백미, 曲子(누룩)를 비롯한 제반 비용, 그리고 별신제 연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구성되었다[『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이후의 洞錢 지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 지출내역 자체가 정리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그 성격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언급한 바와 같이 동중과 관련된 지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1908년 大洞時酒價(10냥)의 경우 面內 各里에서 회합하는 일종의 面會나 面中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가 생각된다. 1911년에도 면주인 관련지출(面主人路貫 1.3냥)이 보이고 1910년에는 洞會 관련 지출이 나타난다(洞會時酒下 11.5냥, 今年洞別下條上). 1915년에도 144.1냥이 '洞會議會計'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1922년 추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1911·1912·1913년에는 洞山 관련지출(洞山側舊里費給 40냥, 兩洞共同山測費 15냥, 洞未來下 64.3냥)이 확인된다. 특히 1912년 尹芻島毛叢分爭 65.8냥의 경우 구조라와 망치 두 마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인 윤돌도의 우모채취와 관련한 촌락간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또한 동중과 관련된 지출에 넣을 수 있다. 1914년과 1915년에도 이장과 관련된 지출이 盧泰玉別下除 1912·1913·1914 三年合中 187.3냥, 盧泰玉 1912·1913·1914 三年里長料除 125냥, 1911년 里長別下除 2.8냥, 面內各面年度里長數料條上 170냥 등으로 나타난다.

앞 시기 동중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많았던 별신제 관련 항목도 꾸준히 확인된다. 1908년 33.95냥이 지출되었고 1911년에도 別神時費用金不足條給 20냥, 1913년 別神時用 4.5냥도 보인다. 1908년 別下(貸給條) 106.93냥, 1913년 金成西處貸用條并錢利報給 84냥 등과 같이 식리전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던 듯하다. 이 외에는 마을과 관련된 공공지출이 대종을 이룬다. 1908년 교육시설(書齋下記 14 냥 조 4두, 1915년 1914年 書堂學校改良時寄付上 110냥), 도로보수(1908년 道路修時酒 15냥), 그리고 산림·토지측량과 벌목, 민적정리 등과 관련된 항목(1911년 山林條 10냥, 申告書紙價·漆紙價 26.12냥, 該基地價 250냥, 山林申請紙券代書費給 10냥, 1913년 伐木時酒下 136.7냥, 木計數雇價 21냥, 西洞貸付山捧印時下 2.1 냥, 伐木時酒下 7.28냥, 1914년 料金 6.67냥, 土地脫漏地查定下 5냥, 1915년 伐木雇錢 12.2, 民籍正理下 7.82냥)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잡다한 지출이 있지만 그 성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이 동중과 동중관련 지출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

었거니와 군포관련 지출을 위해 조성된 동전은 이제 애초의 목적과 크게 괴리된 채 마을 운영을 위한 동중의 회의비, 별신제 등 각종 행사, 동임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교육시설, 도로보수, 산림·토지측량 등 공공비용을 위한 용도로 크게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군포표식전을 사례로 洞錢의 운영실태와 그 변질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제의 삼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군역은 이 시기 사실상 호 단위 부세의 하나로 변모한 상황으로,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심각했다. 1880년 거제부에서는 기금을 조성, 면리에 분급하여 군포 표식전이라 명명하고 그 식리수입을 군포전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군포표식전은 19세기말은 물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도 일정액수가 운영된다. 군포표식전의 분급은 점차 소수 인원에게 다수의 액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는데 이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동일한 현상이 포착되는 전라도 장흥 어서리의 사례와 같이 소수 인원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식리전 운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군포전 납부를 위해 조성했던 군포표식전은 20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크게 변질되어 애초의 취지와 달리 마을차원의 의례나 風教·教育 등의 지출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세·재정 관련 항목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애초 군역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던 식리전은 20세기 이후 촌락사회의 변화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19세기 거제부는 관내 면리에 일정한 자금을 출자, 촌락별로 운영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부세·잡역의 납부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촌락차원의 洞錢으로 자리잡으면서 洞中의 관할 하에 식리 운영되었다. 구조라 洞錢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상은 관권이 촌락사회에 파고 들어가 마을 내부의 자율공간에 미치는 규정력을 생생히 보여준다. 구조라의 동전 운영 사례는

전통사회를 벗어나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어지면서 촌락차원의 사회적 심층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풍부한 시사를 준다.

구조라에는 마을을 대표하여 대소사를 협의하고 처리하는 동중의 논의구조가 있었다. 동중은 각종 직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교체주기는 매우 짧았고 한 사람이 여러 직임을 넘나드는 등 운영방식이 매우 유연했다. 동중은 몇몇 성씨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이들 간 권력적·특권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성씨가 직임을 맡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부세·잡역의 부과와 이에 대한 대응은 동중의 역할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중은 마을 내부의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역을 하거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반 현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중의 권능은 제한적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에 호소하여 공권력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구조라의 동중이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형태로 조직되었고 마을민을 장악하고 결속하는 힘은 느슨한 편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중과 마을민, 마을민과 마을민의 관계도 대체로 수평적이었던 것 같다.

구조라의 洞錢은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각종 식리전으로 구성되었는데 때로는 公錢으로도 불리우면서 洞中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었다. 동전의 운영은 20세기 초까지 일정액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동전의 지출은 대부분 조막역·진상 등 부세·잡역 항목으로 마을자체를 위한 것은 비중이 매우 작다. 존위·공원 등이 관리한 洞錢은 호 단위로 분급되어 호내 가장 나이어린 성년남성의 명의로 분급되었다. 동전분급은 洞任을 맡았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동전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洞錢의 운영과 관련되어 불거지는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 실무자의 부정이나 동전의 상환불능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액수를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1896년 갑오개혁 이후 추진한 식리전 혁파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둘러싸고 거제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이서배들의 책임회피와 지역민의 항의로 소요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 존속시키거나 잠정적으로 남겨놓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리전을 혁파하도록 하였는데 혁파질에 들어간

식리전 항목도 대부분 부세·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동리의 자치적 사안과 관련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를 식리전이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존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어쨌든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 동전을 매개로 한 관권의 촌락사회에 대한 개입과 침투는 거의 일상적이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거제의 삼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군역은 이 시기 사실상 호 단위 부세로 변모한 상황이었다. 구조라를 포함한 거제의 군역은 사실상 허부화한 상태였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거제부에서는 기금을 조성, 면리에 분급하여 식리수입으로 군포전을 충당하고자 하였다. 1880년 조성된 군포표식전은 한일병합 이후까지 운영이 이어지는데 그 분급대상은 점차 소수 인원에게 다수의 액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동일한 현상이 포착되는 전라도 장흥 어서리의 사례와 같이 소수 인원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식리전 운영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군포전 납부를 위해 조성했던 군포표식전은 20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용도가 크게 변질되어 애초의 취지와 달리 마을차원의 의례나 風敎·教育 등의 지출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부세·재정 관련 항목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애초 군역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던 식리전은 20세기 이후 사회환경과 촌락사회의 변화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부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던 洞錢이 왕조의 몰락과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그 용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격변의 시기에 마을의 정체성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어 : 거제도, 구조라, 洞錢, 촌락, 洞中, 洞任, 殖利, 軍布錢

투고일(2021. 4. 12), 심사시작일(2021. 4. 14), 심사완료일(2021. 4. 30)

〈Abstract〉

‘Dong-jung’ of Gujora-ri, Geoje, in th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and the Management of ‘Community Coin’

Song Yang-seop \*

In th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the village of Gujora, Geoje island, discussed and managed various matters in the village community with the structure of ‘Dong-jung’. Dong-jung of Gujora was organized in a flexible and practical form, while its power seizing and unifying the villagers was rather loose. The relationship between Dong-jung and the villagers, and that among the villagers were mostly horizontal. The authority of Dong-jung was limited, so that matters hard to be solved autonomously were handled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Geoje-bu invested a certain amount of funds into the villages in jurisdiction, and with the interest income, the local administration tried to cover the taxation and corvee imposed by various authorities. Permeation and intervention of the official authority mediated with the coin were almost routine. Most of the coin expenditure was for taxation and miscellaneous corvee, while a little portion of the coins were used for the village itself. Gunpopyosikjeon, which were raised for the payment of Gunpo(military cloth levy), was chan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country was colonized by Imperial Japan, in a way less people were assigned for more amounts. This was to shift responsibility onto a small number of members and thus covering rational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interest loan. The usage of Gunpopyosikjeon was also altered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ere most of the coins were spent for the village, unlike the original intent. The alteration of usage in Community Coin shows the signal of seeking new identity of the village in the time of rapid change when the dynasty fell and was colonized by Imperial Japan.

**Key Words :** Geoje island, Gujora, Community Coin(洞錢), village, Dong-jung(洞中), Dong-im(洞任, head of the village), interest loan(殖利), Gunpojeon(軍布錢)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